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036호)

2022.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2. 3. 31.

다. 회 부 일 : 2022.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이라 함)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이는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벤처기업등이 성과급 등을 대신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벤처기업등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벤처기업등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등의 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벤처기업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벤처기업등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III. 검토의견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¹⁾이나 「상법」²⁾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설립·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³⁾, 이른바 ‘스톡옵션(Stock-option)’으로 불리고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그 자체로는 권리일 뿐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권의 부여 시점에서는 과세 또한 이루어지지 않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⁴⁾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a)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⁵⁾⁶⁾.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⑩ (생략)

2)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④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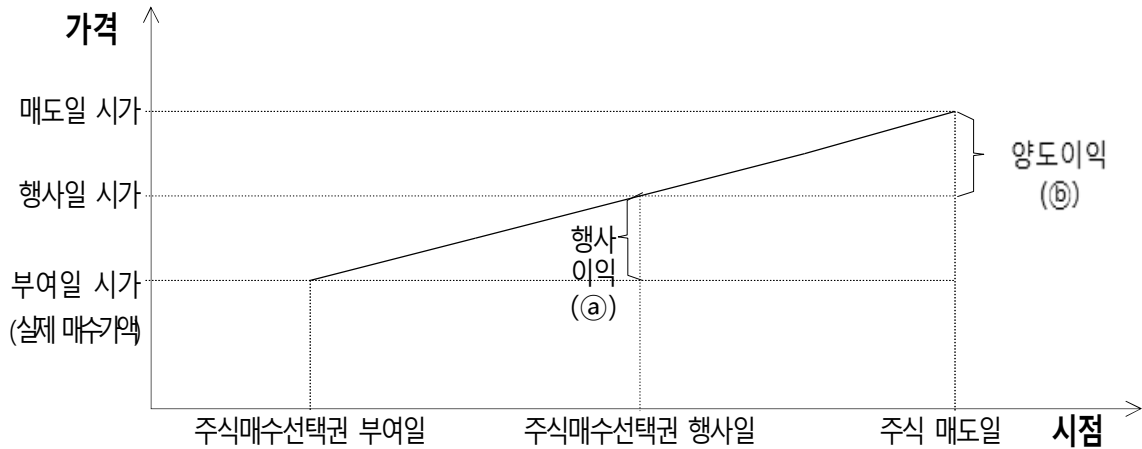
3) 참고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행사가격(벤처기업법: “특별히 유리한 가격”, 상법: “미리 정한 가격”)과 부여한도(벤처기업법: 총 주식의 최대 50% 부여가능, 상법: 총 주식의 최대 15%부여가능)의 차이가 있음.

4)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함.

5)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6%~45%(10억 초과 구간)임(「소득세법」 제55조).

6) 참고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3), 이 경우에도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매도하는 경우, 그 양도이익(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⁷⁾.

□ 벤처기업⁸⁾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

로 합산과세(6~45%)되므로 과세내용은 사실상 동일함.

7) 소액주주의 경우 세율은 10%~20%, 대주주인 경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등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개정된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에 따라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임.

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3)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4)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단서 생략)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임직원에게 대해 높은 임금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성과급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에 우수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여러 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특례규정은 모두 현행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인데, 현행법 제16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이고, 현행법 제16조의3은 ‘납부특례’로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그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을 5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현행법 제16조의4는 ‘과세특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대신 주식의 양도 시점에서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을 합산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종합소득 아닌 분류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조문	내용	비고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u>비과세특례</u>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u>납부특례</u>	세액을 5년간 분할납부
제16조의4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u>과세특례</u>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추후 과세 가능

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특례의 한도액 확대 (김경만
의원안·이종배의원안·정부안)

현 행	김경만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정부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제16조의2) ○ 비과세한도 : - <u>연간 5천만원</u> * 개정안 발의 당시 : 연간 3천만원	☐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대상 및 비과세한도 확대 ○ 비과세한도 : - <u>연간 5천만원</u>	☐ 비과세한도 상향 ○ 비과세한도 : - <u>연간 2억원</u>	☐ 비과세한도 상향 ○ 비과세한도 : - <u>연간 2억원</u> - <u>누적한도: 5억원</u> * 근로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김경만의원안 2021. 12. 1. 발의(의안번호 13651), 이종배의원안 2022. 3. 31. 발의(의안번호 15036) 정부안 2022. 9. 1. 제출(의안번호 17151)

☐ 개정안들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특례 확대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 김경만의원안은 비과세한도를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⁹⁾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며,
- 이종배의원안은 비과세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 정부안은 비과세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누적한도 5억원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1996년

9) 개정안 발의 이후 2021년 세법개정으로 비과세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됨.

행사가액의 5천만원 이내로 신설되었으나 2006년에 폐지되었다가, 2017년 행사이익의 2천만원 이내로 비과세한도가 재신설되었고, 2021년 세법개정으로 행사이익의 5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음.

[주식매수선택권 연간 비과세특례 한도액 추이]

개정연도	1996년	1999년	2000년	2006년	2017년	2020년	2021년
금액	행사가액의 5천만원	행사가액의 3천만원	행사이익의 3천만원	<폐지>	행사이익의 2천만원	행사이익의 3천만원	행사이익의 5천만원

□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비과세한도 확대 시 벤처기업 임직원의 낮은 연봉수준을 보조해주는 효과가 확대되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벤처기업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벤처산업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2%, 현재 활용 중인 기업은 5.9%,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14.6%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계획]

구분	부여경험 있음	활용 중	활용계획 있음
2020년	0.2%	2.4%	2.4%
2021년	1.2%	5.9%	14.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둘째,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벤처산업 전반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2022년 6월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67,605명이 증가한 76만 1,082명(총 34,362개사)하여, 고용 증가율은 약 9.7%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3.3%)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¹⁰⁾, 개정안과 같이 벤처산업에 대한 성장지원을 지속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입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 또한 함께 고려하여 그 한도상향 여부 및 적정 한도액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비과세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2020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4.8%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감안할 때 해당 비과세의 적용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¹¹⁾으로 보임.

10) 2022년 상반기 벤처스타트업 일자리 동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2022. 8.

11) 다만, 정부안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적한도액을 5억원으로 규정하였음.

[2020년 귀속소득 기준 급여규모 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규모	1.5천 이하	2천 이하	3천 이하	4천 이하	4.5천 이하	5천 이하	6천 이하
인원 (A)	2	14	63	316	195	258	669
금액 (B)	0	63	229	757	533	748	2,777
기존과세소득 (C=B/A)	-	4.5	3.6	2.4	2.7	2.9	4.2
현행과세소득 (D=C-20)	-	-	-	-	-	-	-
개정안에 따른 과세소득 (E=C-170)	-	-	-	-	-	-	-
총급여규모	8천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10억 초과
인원(A)	1,362	1,549	4,558	1,522	895	413	168
금액(B)	9,993	15,599	105,885	106,083	121,443	153,526	370,932
기존과세소득 (C=B/A)	7.3	10.1	23.2	69.7	135.7	371.7	2,207.9
현행과세소득 (D=C-20)	-	-	3.2	49.7	115.7	351.7	2,187.9
개정안에 따른 과세소득 (E=C-170)	-	-	-	-	-	201.7	2,037.9

주: 2020년은 비과세한도가 3천만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비과세한도인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의 과세소득은 D이며,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한도 2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세소득은 E가 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이중배의원 대표발의, 2022. 3. 31, 의안번호 15036)

둘째, 주식매수선택권이 임원 등 소수의 담세력이 높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부여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¹²⁾, 또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뿐만 아니라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실현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경우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음.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연평균 771억원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발생

12) 투데이신문, “케이뱅크, 전 임직원에게 나눈다던 스톡옵션…경영진에 59% 몰아줘”, 2021. 7. 26.
 한국경제TV, ““상장하면 수백억 차익”...스톡옵션 50만주 받은 직원”, 2021. 6. 16,
 뉴스핌,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차별에 일부 직원들 ‘불만’”, 2019. 5. 21.

할 것으로 전망되었음¹³⁾¹⁴⁾.

13) 정부 비용추계는 추정근란을 사유로 작성·제출되지 않음

14)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른 향후 5년간 재정수입 변화 전망]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누적
금액(억원)	-771	-771	-771	-771	-771	-3,855

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제16조의3) ☐ 내용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분할납부 ☐ 적용대상 - 비상장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벤처기업 - <신 설>	☐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내용 : (현행과 같음) ☐ 적용대상 - 비상장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벤처기업 - 코스피, 코스닥 상장벤처기업

* 정부안 2022. 9. 1. 제출(의안번호 제17151호)

☐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납부 특례의 적용대상에 코스피(KOSPI)·코스닥(KOSDAQ) 상장 벤처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재는 비상장벤처기업과 코넥스상장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제 매수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市價)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특례 금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에 같이 법 제16조의2에 따라 현행 연 5,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바, 그 이상의 행사이익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¹⁵⁾ 종합소득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15) 주식매수선택권을 벤처기업 재직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됨.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존의 근로소득(연봉)이나 기타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 납세 부담이 크게 발생¹⁶⁾하게 되므로, 그 납세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2013년 세법 개정 시 그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 (해당 세액을 3년간 분할하여 납부)을 신설했으며, 이후 20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 세액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해당 조세지출의 실적¹⁷⁾은 최근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21년 기준 약 2억원 수준임.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전망)	2023년(전망)
조세감면액	1.2	1.6	2	4	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과 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후 행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이익 또한 몇 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데, 행사에 따른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도 마찬가지임.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통상 그 행사를 위한 최소 재직기간이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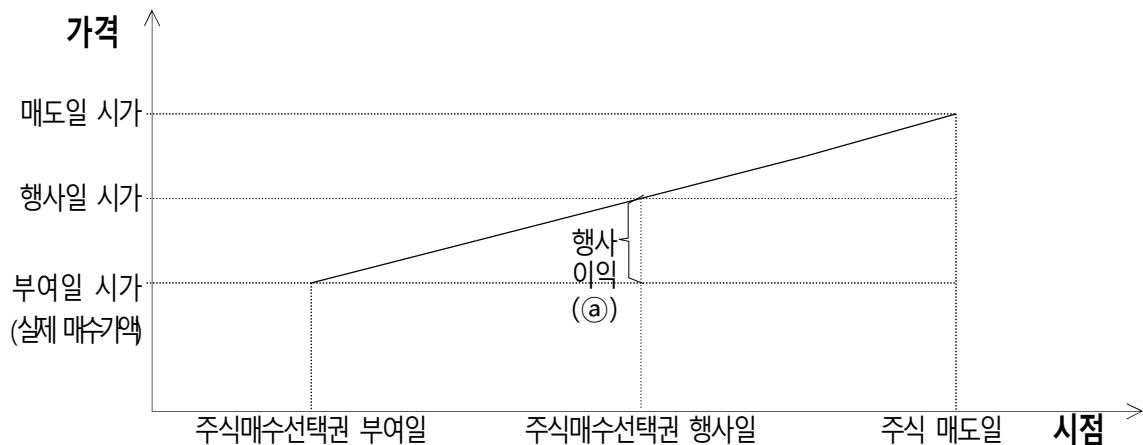
16) 소득세율은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 38%, 3억원~5억원 구간 40%, 5억원~10억원 구간 42%, 10억원 초과구간 45%임(「소득세법」 제55조)

1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16조의4)와 합산된 것으로, 조세지출 예산서 자체가 합산하여 작성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합산된 자료를 사용하였음.

재하는데 「상법」상의 최소 재직기간(2년) 외에 계약¹⁸⁾에 따라 추가되는 최소 재직기간(이른바 “클리프”)이 있으며,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부여받는 기간(이른바 “베스팅”)이 존재하는바, 통상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후 행사까지는 몇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¹⁹⁾.

또한 행사이익(㉠)은 실제 매수가액과 행사 당시의 시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그 가격 차이는 해당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과 행사일 간의 몇 년 단위의 기간(클리프, 베스팅 기간 포함)에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몇 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이익을 한 과세기간에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둘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

1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을 의미함.

19) 예를 들어, 3년의 클리프(Cliff)에 20%씩 5년에 걸쳐 베스팅(Vesting)이 주어지는 경우, 2022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2026년 20%, 2027년 40%, 2028년 60%, 2029년 80% 2030년에 10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로, 유동성 측면을 고려하여 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실제 매수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이를 의미하는바, 행사이익이 크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매각하기 전까지는 현금화된 소득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다만, 코스피·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 규모를 비교할 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각종 특례의 적용이 필요한 초기 벤처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코스피·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규모 비교 (9월 30일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	16,984,510	3,088,640	42,186

자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KRX KONEX(일일시황)

해당 납부특례의 대상 임직원 또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을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것일 뿐 벤처기업 임직원의 세액 자체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조세특례에 비하여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라.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요건 및 사후관리 명확화(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4) ○ 내용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까지 이연 후 양도소득세로 과세 ○ 적용대상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신 설> ○ 적용요건 -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 <신 설> ○ 특례배제 사유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 <신 설>	□ 과세특례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내용 : (현행과 같음)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u>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u> ○ 적용요건 - (현행과 같음) - <u>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것</u> ○ 특례배제 사유 - (현행과 같음) - <u>전용계좌 요건 미충족</u>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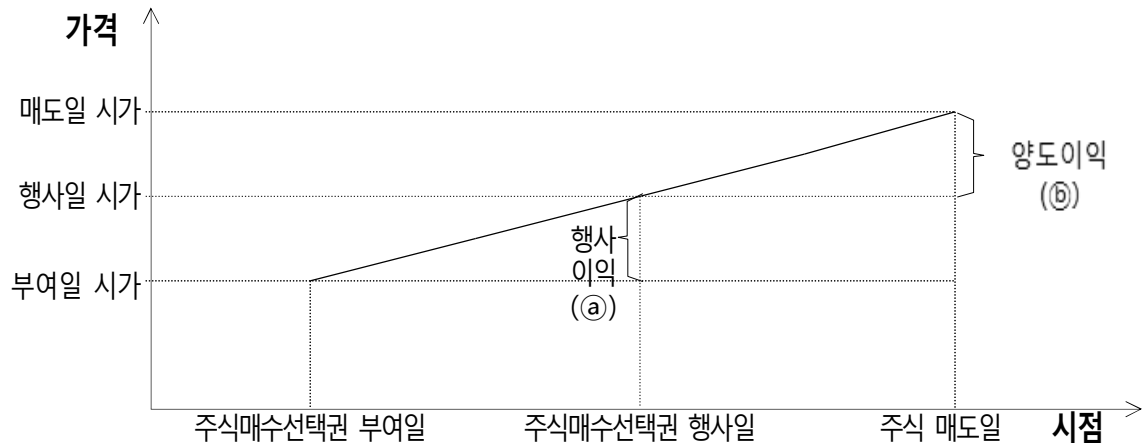
* 정부안 2022. 9. 1. 제출(의안번호 제17151호)

□ 현행법 제16조의4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제16조의4는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이익(㉔)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신, 향후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을 합산한 금액(㉔+㉕)에 대해 양도소득세²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체계 및 현행 과세특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란, 주식매수선택권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② 3년간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 ③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한 것이 아닐 것 등²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 과세특례로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기를 처분단계로 이연할 수 있으며, ② 종합소득 과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선택하여 납부함으로써 세율에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분류과세됨(「소득세법」 제4조)

21) 그 밖에도, ④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한 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⑥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등).

[일반적인 과세절차와 과세특례와의 비교]

단계	일반적인 과세 절차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현행 제16조의4)
행사단계	행사이익(㉠)을 종합소득 과세 (6~45%)	행사단계에서의 종합소득과세 대신, 처분단계에서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10~25%) 과세가능
처분단계	양도이익(㉡)을 양도소득세 과세 (10~25%)	

□ 개정안은 ①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행사시점에 부여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과세특례 요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것’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먼저,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²²⁾이 있어왔음.

요컨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행사시점

22) 서면-2021-법령해석소독-3480, 2021. 8. 31, 서면-2021-법령해석소독-5539, 2021. 10. 21 등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로 답변됨.

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 동 과세특례를 배제한다면,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제
공함으로써 벤처기업에 우수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다음, ② 과세특례 요건에 전용계좌 사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
는 경우 위반하는 날 특례를 배제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주
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²³⁾를 신청²⁴⁾하여야 하며,
해당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
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전용계좌를 통하여만 거래하도록 정하고 있음.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4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
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
로 사전에 약정할 것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 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및 운용 절차]

임직원	벤처기업	금융투자업자
①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 개설 ② 특례적용신청서 벤처 기업에 제출 (전용계좌개설확인서 첨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 하는 주식을 전용계좌에 입고 -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 용대상명세서 세무서 제출	- 전용계좌거래현황 신고서 세무서 제출
- 행사 신청 전일까지	- 행사한 다음달 10일까지	-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만, 현행 규정은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의 배제 여부 및 방법에 대한 해석상 논란²⁵⁾이 있어온 바,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전용계좌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25)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 5. 11 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①을 위반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며,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키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고 회신됨.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u>5천만원</u> 이내의 금액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아니한다. ② (생략)	----- ----- -----<u>2억원</u>----- ----- -----. ② (현행과 같음)
--	--

문 의 처
02)6788-5155